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나766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I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김강의

변론 종결 2020. 12. 10.

판결 선고 2021. 1. 21.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51732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그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7. 8.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순번 4, 6, 9, 10번 기재 각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대여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각 대여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순번4, 6, 9, 10번 기재 각 대여금 청구 부분(아래 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대여금
청구와 같다)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내인제1심 공동피고 B
명의로 'F'라는 상호의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 17.부터 2017. 3. 2.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원고에게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1)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차용증상의
대여금을 지칭할 때는 순번을 표시하여 '○번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작성일자	금액	변제기
1	2017. 1. 17.	1,100만 원	없음
2	2017. 1. 24.	500만 원	없음
3	2017. 2. 14.	1,000만 원	없음
4	2017. 3. 2.	500만 원	2017. 3. 2.

다.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17. 1. 17. 1,100만 원, 2017. 1. 24. 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2,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7. 1,100만 원, 2017. 1. 24. 500만 원, 2017. 2. 14. 1,000만 원, 2017. 3. 2. 5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대여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 내지 4번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기계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이며, 회계처리를 위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한바, 이는 위 당사자 간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갑 제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 피고 및 H 간에 2016. 7.경 각자 투자를 하고, 이득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필터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이 체결된 사실, 당시 작성된 약정서제4항에는 '원고는 원자재 부분과 구매할 물품이 있을시 지원을 해주고, 원고에서 가지급금으로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6, 9, 12, 13, 1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위 당사자는 2017.1. 1. 위 필터사업을 정리하고,

기존 동업약정에 따른 모든 사항들을 정리하기로 합의 한 사실[제1심 증인 H은 당시 필터사업 중 이미테이션 오일필터에 관한 부분만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고, 연료필터에 관한 사업은 계속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당사자간에 2017. 1. 1. 작성된 서류에는 '2016. 4. 22.자 투자약정서(최초 작성된 약정서)에따른 모든 사항들을 종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일부 사업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내지 원고의 대표이사 L과 H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다), L 피고는 1번 대여금의 경우 위 필터사업에 필요한 기계(합지머신)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받아 실제로 해당 기계 계약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2017. 1. 17.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M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을 제14호증), 나아가 위 돈이 기계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송금된 것인지, 위 기계가 필터사업에 필요하여 구입된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위 돈 중 나머지 100만 원은 주식회사 M에 송금되지도 않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1,100만 원을 송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또한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기계는 현재 피고가 운영하는 'F' 내에 있다는 것인바,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가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E 피고는 2번 대여금의 경우, 위 필터사업에 필요한 기계(프레스원기계)의 운송 및 설치비용으로 받아 실제로 그와 같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피고는 3번 대여금의 경우, 위 필터사업에 필요한 기계(프레스원 기계)의 구입대금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주장하는바(구체적으로는 위 기계와 관련하여 F가 원고에게 위 기계를 1억 1,000만 원에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로는 5,000만 원만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보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7. 2. 7. 원고를 상대방으로 1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구체적인 경위나 실제 대금, 비용보전약정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피고는 4번 대여금의 경우, 원고가 아닌 그 직원 N2)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후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N가 2017. 3. 2.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가 같은 달 15. N 명의의 계좌로 다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위 거래는 4번 대여금과 별도의 거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비 원고는 2016년경부터 그 명의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그중 일부에 관하여만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작성된 것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작성된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100만 원 및 7 그중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8.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3), 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나머지 2,6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4)인 2018. 7.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16.까지는 연 5%의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조서영, 판사 신유리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각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주장 'O'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소송물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각 대여금청구는 모두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대여금청구가 모두 인용된 이상, 피고는 위 5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2018. 6. 8.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해당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4) 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그 반환을 최고한 때(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는 상인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위 대여금에는 상사이율 6%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2,600만 원에 대하여 2018. 7.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1심판결 선고일[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1심판결 선고일까지인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참조)]인 2019.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으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2018. 6. 8.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해당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2,600만원에 대하여 2018. 7. 8.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